

서울특별시 소비자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1. 회부경위

가. 의안번호 : 제430호

나. 발 의 자 : 박성연 의원(찬성자 20명)

다. 발의일자 : 2023년 1월 12일

라. 회부일자 : 2023년 2월 9일

2. 제안이유

- 「소비자기본법」 개정(2016.3.29.)으로 결혼이민자를 소비자 안전 취약계층 보호 대상에 추가함에 따라 관련 법령에서 개정된 사항을 조례에 반영하고자 발의됨.

3. 주요내용

- 결혼이민자를 우선적 보호시책 강구 등의 대상이 되는 안전취약 계층에 추가함(안 제28조).

4. 검토의견 (수석전문위원 강상원)

가. 개정안의 개요

- 개정안은 결혼이민자의 소비 피해를 예방하고 다양한 소비자 정보를 제공하고자 「소비자기본법」이 개정(2016.3.29.)된 사항을 조례에 반영하기 위해 발의됨.

나. 결혼이민자 소비자교육의 필요성

- 결혼이민자¹⁾의 증가와 경제활동 참여가 활발하게 일어나는 상황에서 언어소통 문제로 인한 소비자 피해 사례가 빈번히 발생하고 있음.

<연도별 결혼이민자 현황>

(단위 : 명)

구분 (서울시)	2016	2017	2018	2019	2020	2021
합계	159,501 (27,473)	160,653 (27,491)	166,882 (27,561)	173,882 (28,100)	173,756 (27,883)	166,771 (27,327)
남성	28,728 (7,264)	30,745 (7,391)	32,858 (7,414)	34,628 (7,527)	35,679 (7,752)	31,752 (7,719)
여성	130,773 (20,209)	129,908 (20,172)	134,024 (20,147)	139,254 (20,528)	138,077 (20,131)	135,019 (19,608)

* 출처 : 행정안전부, 지방자치단체외국인주민현황

- 최근에는 코로나19로 온라인거래가 대폭 증가하면서 배송, 환불 처리 등에 대한 어려움과 보이스피싱, 스미싱과 같은 신종 전기통신금융사기에

1) 「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 제2조제3호에 따라 대한민국 국민과 혼인한 적이 있거나 혼인관계에 있는 재한외국인을 의미함.

노출되는 위험이 증가함.

- 이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우선적 보호시책 강구 등의 대상이 되는 안전취약계층에 결혼이민자를 포함하는 내용으로 「소비자기본법」이 개정됨(2016.3.29.).
- 서울시는 다문화가족 특성화사업으로 결혼이민자 통·번역서비스, 한국어 역량강화지원 등을 추진하고 있으나, 소비자 교육 관련 사업은 아직 실시된 바 없음.
- 개정안은 「소비자기본법」의 개정내용을 반영하여 언어소통에 어려움이 있는 결혼이민자를 소비자안전 취약계층에 포함시켜 소비 활동에 대한 우선적인 보호시책을 강구하도록 근거규정을 마련함.
- 소비자 안전사고에 취약한 결혼이민자를 우선적으로 보호하여 피해를 사전에 예방하고, 안정적인 경제활동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한다는 점에서 개정안의 입법 취지는 타당한 것으로 판단됨.

담당 조사관	연락처
노혜미	02-2180-8056
최범준	